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안



하 남 시 의 회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6. 2.

발 의 자 : 문 외 숙 의원(인)

1. 제정이유

-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화와 시설생활(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해 행정 및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감사대상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시장은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감사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감사반은 감사종료 후 감사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사회복지사업법)

6. 예산수반 사항

7.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2016. 1. 12. ~ 1. 22.)

8. 부서협의 결과 : 덧붙임

9. 기타 참고사항

10. 관련부서 : 경기도

하남시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 감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관리의 효율화와 시설생활(이용)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및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 등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행정 및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란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에 대한 감사를 말한다.

가. 법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행정, 노무 등에 대한 모든 사항

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시설 조치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 1)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에 대한 고지 여부
- 2) 시설 내에 진정함 설치 유무
- 3) 보호대상자가 작성한 진정서의 인권위원회 송부 여부
- 4) 방문조사 시 협조 상태 등

다. 보조금, 후원금, 수익사업 등 회계 관련 사항

라. 공사 및 구매 등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사항

마. 부동산, 장비 등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및 별도 전산시스템의 회계, 후원 등의 보고 사항

사.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감사의 대상) 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제4조(감사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조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대상
3. 감사범위
4. 감사반 구성 및 사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감사반 구성 등)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을 편성할 때에는 반장과 감사담당자를 두되, 반장과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부서의 직원, 시민명예감사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외부전문기관 등을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최근 3년 이내 복지시설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회계법인 등

으로 한다.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파악

제8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 사회복지시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시설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과다 감사방지)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시 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조사 기간 30일, 직접 감사기간 30일 이내 감사를 마무리해야 하며, 최대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추가비용은 총비용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 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현지 조치사항
7. 그 밖에 특이사항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 시장은 처분대상인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하남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2조(관계법령·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시설 행정 및 회계감사에 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감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

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8.4.]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때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5.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하였을 때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였을 때
 8.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였을 때
 9. 시설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때
 10. 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개하지 아니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및 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도·감독을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 ⑥ 지도·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6.>
- [전문개정 2011.8.4.]